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하되,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의2 신설).

II. 검토 의견

- 신설 규정인 안 제35조의2제4항은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¹⁾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런데, 기후영향평가등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적·총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만약, 개별 지역적 기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안 제35조의2제3항[각주 2) 참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또는 협조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볼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1) 전담기관 예시: 국립수산물과학원

2) **안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권한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⁴⁾.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35조의2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2.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기후영향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 등에 <u>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 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 등에 <u>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 기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김 성 완)